

의안번호	2204973
의 퇴 인	박수민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 계 번호	24F456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4조의2 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- 적용기한: 2027.12.31.	
2	안 제144조의3 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에 관한 권리의 양도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미공제금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않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- 적용기한: 2027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4조의2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	안 제144조의3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에 관한 권리의 양도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(이하 ‘미공제금액’)이 발생한 경우,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

내용으로,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)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할 경우, 미공제금액이 발생
- 개정안은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
 - － 단,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환급받을 권리의 양도시 회계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법인의 미공제금액 발생 규모와 해당 특례의 환급·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하나, 자료 및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법인별 납부세액의 발생 여부, 최저한세 미달 여부 및 이로 인한 미공제금액 규모에 대한 자료는 현재 집계되지 않음
 - －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적도 2021년 세법개정으로 2022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어 현재 2023년 신고기준 실적(7,432억원)만 가용한 상황
- 또한,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신설로 인하여 환급 및 제3자 양도가 허용되는 미공제금액의 계산방식, 양도시 회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미공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